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창호

#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2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2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 2017년부터 사용본거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그에 따른 취득세도 전국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도세 기본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관련 특례”에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도록 개정(안 제4조)
  - ※ 일반 자동차는 기시행(전국 어디서나 등록 및 취득·등록면허세 신고납부 가능)
-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 대행 관련서류에 대해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하는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도록 개정(안 제4조)
  - ※ 송부기간은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므로 단축하도록 개정

## 4.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2015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의 이륜자동차의 등록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 무관할 등록관련 특례”에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것(안 제4조)과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 대행 관련서류에 대해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하는 기간을 내부적 전자시스템을 이용하므로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도록 개정(안 제4조)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과 운영상의 신속성을 위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됨.

붙임 :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